

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한 철 우

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3년 4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4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와 개발사업 및 민원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경제자유구역청장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읍부즈만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4. 검토의견

금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은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와 개발사업 및 민원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,

주요 내용은 관할구역으로 청원 바이오메디컬지구와 리서치·관광·비즈니스지구, 에어로폴리스지구,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4개 지구를 규정하고 분장사무, 조직 및 기구와 입주기업의 경영 및 생활면에서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ombudsman을 두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다만, 경제자유구역청의 본청과 지청간의 행정업무 범위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.

붙임 : 1. 충북경제자유구역 설치 조례안 1부. 끝.